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에 따른 학업 보장 및 제74조의4에 따른 직장 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5 신설).

II. 검토의견

- 안 제37조제3항 후단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최종심사 후 사실상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수여가 결정되었음에도, 소속 대학원 학사일정으로 인해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항임.

그런데, 개정안은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학위 수여(졸업) “예정”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¹⁾되어 있고, 「변호사시험법」, 「의료법」, 「간호법」 등 입법례²⁾에서도 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다르게 되어 용어의 통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안 제74조의5은 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³⁾에도 불구하고

-
- 1)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별표]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마. 졸업(예정) 증명
2)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범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간호법」 제4조(간호사 면허) ③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3)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학업 보장 및 직장 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지, 이 법 시행 당시의 비상근 예비군 중 훈련 소집기간이 연간 30일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 · ②(생략)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3. 병역관정검사, 재병역관정검사, 입영관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
-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신 설></u>	<u>제3조(비상근 예비</u> <u>군의 휴무 등 처</u> <u>리에 관한 적용</u> <u>례) 제74조의5의</u> <u>개정규정은 이</u> <u>법 시행 이후 비</u> <u>상근 예비군으로</u> <u>선발하는 경우부</u> <u>터 적용한다.</u>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병 섭)